

비 대 면 투 자 일 임 계 약 서

_____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이루다투자일임 주식회사 (이하 “회사” 라 한다)은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이하 “투자일임재산” 이라 한다) 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해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일임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① “투자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이란 고객이 회사로부터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고객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회사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 ③ “투자일임재산”이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으로서 고객 명의 투자일임 대상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재산을 말한다.
- ④ “투자원금”이라 함은 계약체결 전일의 투자일임재산 평가금액에서 기준일까지의 기간동안 고객이 투자를 위해 입출금한 자산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 ⑤ “모바일앱”이란 고객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여 회사로부터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 ⑥ “투자중지”란 고객이 본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회사에게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중단하고 투자일임 대상 계좌 내 재산을 모두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⑦ “운용재개”란 투자중지를 한 고객이 투자일임재산을 최소운용금액 이상으로 한 후 회사에게 일임운용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운용지시를 말한다.
- ⑧ “최소운용금액”이란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투자일임재산을 말한다.
- ⑨ “최소유지금액”이란 고객이 충도출금 시 투자일임 대상 계좌에 남겨 두어야 하는 최소 금액으로, 최소운용금액과 출금신청일 기준 예상 일임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제 3 조(투자일임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 ①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 ② 투자일임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③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 ④ 투자대상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 ⑤ 투자대상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 ⑥ 그 밖의 제1호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제 4 조(투자대상)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 ③ 그 밖에 고객과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 5 조 (투자일임의 내용)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에게 일임 및 요구하고 회사는 이를 수락하여 투자를 행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과 성향에 부합하는 전략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각 자산을 구성할 포트폴리오 및 금융투자상품의 선택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 가치 판단에 대한 사항
4. 금융투자상품 등의 종류, 종목, 매매시기, 매매가격 등의 결정
5. 제4호를 위하여 필요한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결정 (금융투자상품의 모집 등에 대한 청약포함)과 이행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제 6 조 (이해상충 방지기준 및 절차)

- ① 회사는 고객에게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회사의 투자일임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 회사, 또는 고객과 다른 고객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유지한다.
- ③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투자일임수수료)

-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 ② 기본수수료는 정액 또는 투자일임재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선취 또는 후취로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정해진 방법을 따른다. 또한 중도해지시에는 잔여 계약기간까지 미경과 운용일수를 계산하여 기 수취한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환급한다.
- ③ 성과보수는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따라 운용성과와 연동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성과보수

산정일로부터 정해진 기간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수수료 지급시기에 따른다.

- ④ 제2항과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보수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8 조(회사의 신의성실 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9 조(고객의 의사 등 사전 파악)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투자대상자산,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

제 10 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 ①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온라인, 전자우편 또는 우편, 직접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제 11 조에 따른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매매회전율, 위탁수수료 및 제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사항 또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운용한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및 유지·보수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수수료(성과보수 포함) 부과기준, 지급시기 및 금액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료 지급 내역
 7.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 (시기, 실적, 잔액)

8. 그 밖의 관계법령상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자일임보고서를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투자일임보고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 11 조(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운용 관련사항)

- ① 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9 조제 1 항제 1 의 2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
- ② 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1 인이상 둔다.
- ③ 회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기존 로보어드바이저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단순 수정, 개선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 ④ 고객은 제 3 항의 로보어드바이저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로보어드바이저 교체를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2 조(비밀유지의무)

-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 3 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내용과 관리사항, 신상내용 등에 대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 대상 계좌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 자료를 계좌개설 영업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제 13 조(통지의무)

- ① 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없이 모바일앱의 개인정보 수정 등을 통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또는 모바일앱 내 메시지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단,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방법을 달리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방법에 한다.
-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객센터의 전화번호 등은 모바일앱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 14 조(운용결과의 귀속)

본 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서비스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5 조(회사의 금지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②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③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⑤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2. 차익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⑥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사채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 ⑦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 ⑧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⑨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⑩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인 경우
 2. 증권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경우
 4. 환매조건부매매
 5.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거래인 경우
- ⑪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⑫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단,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⑬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⑭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⑮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 ⑯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 ⑰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내역에 대한 고객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⑯ 그 밖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행위

제 16 조(회사가 위임 받을 수 없는 행위)

- ① 고객의 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없다.
 1.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증권회사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3. 투자일임재산으로 소유하는 유가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4. 그 밖의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행위
- ② 회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위임 받을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위임 받을 수 있다.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2.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3. 유상증자의 청약
 4. 전환사채권의 전환권 행사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6.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 행사
 8.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관련법상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
- 2.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제 13 조에 따른 고객의 운용지시 포함)로 인한 손실

3. 제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 18 조(업무의 위탁)

-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 분의 50 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

제 19 조(계약기간)

- ① 투자일임계약의 유효기간은 <별지>에서 고객과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② 계약체결일은 고객이 투자일임 대상 계좌의 개설을 모두 완료하고, 본 계약의 체결을 동의한 날로 한다. 이후 고객의 계좌에 최소운용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일임운용을 시작한다.
- ③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1 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을 통지하면서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 때 갱신되는 계약의 투자일임재산은 계약기간 만료일의 평가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⑤ 계약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 20 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고객은 전화, 서면 또는 모바일앱 등 회사가 마련한 전자적 장치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 ③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본문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계약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④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⑦ 회사는 계약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계약개시, 만료, 해지, 투자중지 시의 재산형태)

- ①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재산형태와 투자중지 또는 만료, 해지(철회 포함)하는 시점에서 고객에게 반환하는 재산형태는 현금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고객이 사전 요청하여 합의한 경우,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증권으로 할 수 있다. 단, 증권의 경우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에 한정한다.

제 22 조(투자일임재산의 평가 및 정산)

현금 외 투자일임재산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 사이의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투자중지 또는 계약해지시에는 당시 자산처분시가로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다음 영업일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에 의한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
2.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의한다.

제 23 조(투자실적의 평가)

- ① 투자수익률은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투자일임재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

투자일임재산의 계산은 제22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②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제 24 조(투자일임담당자의 선정 및 변경)

-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운용인력을 선임한다.
-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운용인력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운용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회사는 제 4 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고객의 제 5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⑦ 고객은 제 4 항 단서에 의한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운용인력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25 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26 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7 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 윤 을

고객 성명 (인)
생년월일

<별지> 세부계약조건

1. 투자일임 대상 계좌

- (1) 증권사 :
 (2) 계좌번호 :
 (3) 계좌명 :

2. 고객에 대한 통지

- (1) 통지방법 :
 (2) 주소/전자우편주소 :

3. 일임상품명 (계약명) :

4. 투자대상

5. 계약기간 :

- (1) 계약체결 이후 대상 계좌에 최소운용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운용을 시작합니다.
 (2)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을 통지하고, 고객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6. 투자일임원금 : 투자일임 대상 계좌에 고객이 입출금한 금액의 합계

- (1) 최소운용금액 :
 (2) 계약갱신 시의 초기 투자일임원금은 계약기간 만료일의 투자일임재산 평가금액에서 성과수수료와 기본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7. 투자일임수수료 : 기본형 / 성과형

	기본형	성과형
기본수수료	기본수수료율 :	해당사항 없음
성과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고객과 협의
중도해지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징수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별 후취 (6월 말, 12월 말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 투자증지일 또는 계약해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의 만료일 - 투자증지일 또는 계약해지일
징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추심이체 출금 동의]에 의하여 회사가 정산하여 수령합니다. (10. 기타 특약사항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되며,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30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고객은 같은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30일 후 현금이 없을 시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충당합니다. - 고객의 계좌에 재산이 부족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현금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지급일에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징수합니다.
--	--

(1) 기본수수료 :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2) 성과수수료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금액(이하 초과수익금)을 기준으로 성과수수료율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 초과수익금이 부(負, 음수)일 경우 성과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같은 계약기간(매 1년) 내 투자중지 등으로 성과수수료를 기징수한 내역이 있는 경우, 2회차 이후의 성과수수료 산정 시 기징수한 성과수수료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기징수한 성과수수료가 부과하여야 할 합산 성과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3) 계약의 종도해지에 따른 종도해지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4)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사례는 [별첨]을 참조해주세요.

8. 투자일임재산의 출금

(1) 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출금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 장애 시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출금 가능금액 및 가능일

- 일부 출금 신청 : 최소유지금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출금 신청 가능
➤ 최소유지금액 = 최소운용금액 + 출금신청일 기준 예상 투자일임수수료
- 전액 출금 신청 : 계약해지 또는 투자중지 신청 후 출금 가능
- 출금가능일 : 출금신청일로부터 6 영업일 이후 (계약해지 또는 투자중지 시에는 수수료정산 후 출금 가능)

(3) 투자일임재산의 시장 처분 불가 또는 증권시장 등의 폐쇄·정지·휴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요청한 출금신청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9. 전문인력 및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명	공시일	테스트베드 통과여부
구 분	성 명	주요경력

운용전문인력		
로보어드바이저 유지보수 전문인력		

상기 임직원은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0. 기타 특약사항

(1) 추심이체 출금 동의 관련 안내

- 투자일임수수료는 고객의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에 근거하여 회사가 직접 징수합니다.
- 고객의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는 본 계약의 필수 요건으로서 계약기간 중 고객이 해당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 시 회사는 고객의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철회 처리합니다.

(2) 출금신청 및 출금가능일

- 일부 출금 신청 : 최소유지금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출금 신청 가능
 - 최소유지금액 = 최소운용금액 + 출금신청일 기준 예상 투자일임수수료
- 전액 출금 신청 : 계약해지 또는 투자중지 신청 후 출금 가능
- 출금가능일 : 출금신청일로부터 6 영업일 이후

[별첨] 투자일임수수료 계산 방법

1. 기본수수료 산정 방법

- (1) 계산식 : [운용기간 투자일임재산의 평균] * 기본수수료율 * [운용기간]/365(윤년의 경우 366)
- (2) 계산사례
 - 운용 상황 예시
 - 최초 투자원금 1,000 만원으로 30 일 운용
 - 500 만원 추가 입금하여 투자원금 1,500 만원으로 20 일 운용
 - 300 만원 중도 출금하여 투자원금 1,200 만원으로 10 일 운용
 - 기본수수료 계산
 - 조건 : 기본수수료율 0.3%, 운용기간 60 일
 - 운용기간 투자원금의 평균 $(1,000*30 + 1,500*20 + 1,200*10) / 60 = 1,200$ 만원
 - 산정 기본수수료 : $1,200 * 0.3\% * 60/365 = 5,917$ 원

2. 성과수수료 산정 방법

- (1) 계산식 :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금액(이하 초과수익금) * 성과수수료율
- (2) 계산 사례 1
 - 운용 상황 예시
 - 투자원금 1,000 만원, 운용 후 산정 기준일 평가금액이 1,100 만원이 된 경우
 - 성과수수료 계산
 - 조건 : 기준수익률 0%, 성과수수료율 9%
 - 초과수익금 : $1,100$ 만원 – $1,000$ 만원 (기준수익률 0%) = 100 만원
 - 산정 성과수수료 : 100 만원 $\times 9\% = 9$ 만원
- (3) 계산 사례 2
 - 운용 상황 예시
 - 투자원금 1,000 만원, 운용 후 산정 기준일 평가금액이 900 만원이 된 경우
 - 성과수수료 계산
 - 조건 : 기준수익률 0%, 성과수수료율 9%
 - 초과수익금 : 900 만원 – $1,000$ 만원 (기준수익률 0%) = -100 만원
 - 산정 성과수수료 : 초과수익금이 부(負, 음수)이므로 성과수수료 없음